

[일련번호 : 17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장애인 재판정 취소 절차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동은 「장애인복지법」 등에 따라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 등록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(장애 정도의 조정) 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항 및 제32조의3(장애인 등록 취소 등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(장애상태 확인) 및 「장애인복지 사업안내」 (보건복지부)에 따르면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 불응으로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는 경우, 재판정기한 10일 전까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판정 기한 종료일에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취소 결정통지 및 등록증 반환 통보를 하여야 한다. 또한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 및 제22조(의견청취)에 의하면 청문은 최소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동은 기한 경과에도 재판정 서류제출을 미이행한 ***에게 24.10.04. 취소 사전통지를 실시하면서, 재판정 기한 10일 전까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여야함에도 재판정기한(24.11.01.) 하루 전날(24.10.30.)을 청문기한으로 정하여 안내하는 등 관련 절차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장애인 재판정 불응에 따른 취소절차 부적정 내역

연번	대상자	생년월일	취소 사전통지일자	청문일자	재판정기한 (취소예정일자)	부적정 내역
1			241004	241030	241101	- 재판정 기한 10일 전까지 청문 실시 미준수(안내한 청문 일자 : 취소결정 1일전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